

# 전주여자고등학교 학교 생활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여자고등학교 학교 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 제4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 장 학생 생활

### 제5조【학교구성원으로서 역할】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르며,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④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 한다.
-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제9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학급의 시설 및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③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⑤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수업 중 교사의 허락 없이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휴대폰과 MP3 플레이어 등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제10조【휴식시간】

- ① 학교의 장,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 등 허용된 장소에서만 한다.
- ⑤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을 하지 않는다.
- ⑥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1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교와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제12조 【용모】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 ① 용의와 복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② 타인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③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④ 두발의 길이·모양·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단, 과도한 염색과 탈색의 경우 규제할 수 있다.)
- ⑤ 등·하교 시엔 교복을 착용 한다.
- ⑥ 교복 착용 시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 ⑦ 교복(동복, 간복, 하복) 착용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으며 기후 상황에 따라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착용한다.
- ⑧ 등하교 시 교복 착용 후 교복 위 덧옷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⑨ 옷 맵시를 위한 교복 수선의 경우 치마 길이만 허용하고 치마 끝단이 무릎을 덮어 야 한다.
- ⑩ 화장의 경우 과도한 색조 화장은 금지하고 가벼운 화장(비비크림, 눈썹, 립밤, 틴트 등)은 허용한다.
- ⑪ 악세서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한다.

### 제13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④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제14조【전자기기 사용】

- ① 학생의 학습능력 신장과 바람직한 면학 풍토 조성을 위해 휴대폰은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한다.(수업 중에 진동이나 벨이 울리거나, 책상 위에 보이게 두는 것도 금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학년에서 보관할 수 있다.
- ③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제15조【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제16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제 3 장 생활 교육 위원회

### 제17조【생활 교육 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사항(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 교육 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 교육 위원회는 교감, 인성인권안전부장,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 담임교사, 학년 생활지도교사로 구성한다.
-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교사는 본 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 직원회에 통보한다.

**제18조【사항설명】**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제 17조 1항에 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③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⑥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공휴일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6일 미만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6일 미만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특별 교육 이수 및 치료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22조【운영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

1. 징계 대상자는 등교하여 봉사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2. 내용
  - 가. 학교 환경정리 활동
  - 나. 교재, 교구 및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 다.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② 사회봉사

1.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는 학생은 징계 기간 동안 매일 등교하여 출석 점검을 받고 협조 기관 및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보고한다.
2. 내용
  - 가.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나.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예술 회관 미화 업무 보조 등)
  - 다.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인 재활기관, 사회 복지관,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등)

### ③ 특별 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획한 금연 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3. 행동 심리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전문기관 또는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1. 사안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조치
2.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요청을 받아 위탁기관 지정 교육이수
3.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 에서 교육 이수
4. 출석정지로 인한 결석은 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 ⑤ 퇴학처분

1.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 학생은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에 대신하여 제11조 6항에 의거한 일정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할 수 있다.
2. 퇴학 처분의 운영은 다음 내용으로 한다.
  - 가.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기관, 검정고시, 입시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나. 퇴학 처분 시 학생 징계 대장에는 '00년 0월 0일 퇴학 처분(00기관으로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과 아울러 진로 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 제23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제24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 제25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 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 제2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제27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기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별표 2)로 정한다.

## 제 4 장 학생생활교육

**제29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0조【강제학습 금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습,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에서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31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제출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및 구제 신청

### 제32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 교육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 제34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④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의 교사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제11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제11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3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정규 교육활동 중 전자기기나 핸드폰을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 및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 교육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 교육 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제 5 장 규정의 제·개정

### 제3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 인성인권안전부장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 ④ 학생·교원·학부모 대표 선출은 각 상황과 여건에 맞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규정안 심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7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년 초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8조【검토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검토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제·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 6 장 학생 인권

**제41조【학생인권의 보장】**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책임과 의무】** 교권에 관한 문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및 지시에 불응하여 인권을 침해할 경우 교외 봉사활동에 처한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생활 교육 위원회 등)

**제43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이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 보호조치를 취하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서의 사안을 처리한다.)

**제4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사자 간에 나눈 대화를 상대방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 3자에게 또 다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45조【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특정 종교에 대한 교내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일정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활동 할 수 있으나, 해당 종교 활동이 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할 경우는 학교장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46조【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일반 학생들의 학습에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이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오용될 소지의 내용일 경우 학교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실명 게시의 경우는 게시자에게 제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7조【소수 학생의 권리보장】**학교장은 빈곤, 장애, 학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학교장은 위와 관련하여 해당 학생 및 이에 반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수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며 이에 대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지각·조퇴·결과를 할 경우 월 1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② 단. 평상 시가 아닌 시험 기간일 경우 출석 인정과 그에 따른 인정점 부여 여부 및 인정 비율은 학업 성적관리규정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 교육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2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2년 2월 1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최종 결재 후 공포 및 시행(2022.3.1.)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 교육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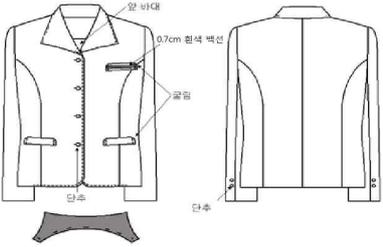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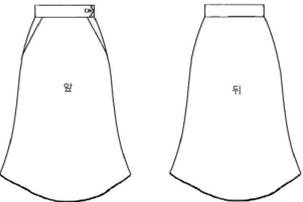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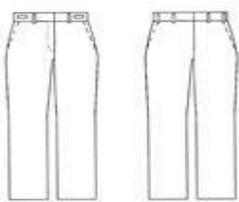
**【별표1】 징계 기준**

항	내 용	징 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등하교시 교복착용 규정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학생	○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3	교사의 교육적 지도(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불응한 학생	○	○			
4	경찰에 연행 또는 구속된 후 훈방, 석방된 학생		○	○	○	○
5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6	규정위반 사안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의 태도가 없는 학생 (변경)			○	○	○
7	화재를 유발한 학생			○	○	○
8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9	고의로 방화 행위를 한 학생					○
10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학생		○	○	○	○
11	공공 시설물이나 집기류 등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	○	○	○
1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13	학교의 교육활동(수업, 시험, 행사 등)을 거부 및 단체 행위를 주도 또는 참여한 학생	○	○	○	○	○
14	미인정 출결(지각, 조퇴, 결과, 외출)을 당해 학년도에 누적 3회 이상 한 학생	○				
15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1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당해연도에 누적 3일 이상인 학생	○	○			
17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당해연도에 누적 10일 이상인 학생	○	○	○	○	
1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누적 20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	○
1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20	부탄가스, 본드, 환각제, 마약류 등을 사용한 학생		○	○	○	
21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22	도박 및 유사 사행 행위를 한 학생		○			
23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24	교내에서 음란물을 소지, 시청, 배포한 학생	○	○	○		
25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6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한 학생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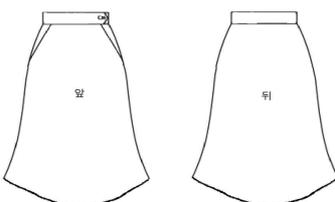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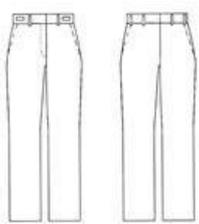
항	내 용	징 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7	신고되지 않은 집회 또는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28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9	허가 없이 동아리를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30	생활규정 제11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31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b>[고사중 부정 행위]</b>						
32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33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을 소지하거나 책상, 벽 등에 사전 기재해 놓은 행위	○	○			
34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	○	○	○	
35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거나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	○	○	
36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	○	○
37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38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	○	○	○
39	채점된 답안지를 빼내어 바꾼 게 발각되었을 경우			○	○	○
40	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41	동일 사안으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42	징계 이행 에 불응한 학생은 최초 징계 결정 사항의 상위 징계 처벌한다.					
43	상기 징계 기준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것은 생활 교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별표 2】전주여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규격)

■ 동복 ■

		원 단 명	특 징
		<p>*원단: 개버딘(사방스판)                      *색깔: 흑감색                      *재질: 모/폴리 = 60/40                      *배색(백선): 백색                      (폴리/레이온 = 65/35)</p>	<p>1)단추                      - 흑감색 싸개단추 4개(18mm)                      소매: 흑감색 싸개단추 2개씩(15mm)                      2)백선표: 백색배색원단1줄 (0.7cm)                      3)길이:허리벨트 밑선에서 <b>5cm 이상 내려와야 함.</b>                      4)윙카라 디자인                      5)백색 덧 카라 있음(자켓 1당 2개)                      6)양 옆주머니                      7)안감:폴리에스테르 100%(정전기방지용)                      8)교복 상의 여밈(속) 지퍼(흑은 잠금 처리로 제작)추가                      9)단추 바느질 꼼꼼하게(쉽게 뜯어지지 않도록)</p>
치마 / 바지 ^ 선택 v		<p>*원단: 개버딘(사방스판)                      *색깔: 흑감색                      *재질: 모/폴리 = 60/40</p>	<p>1)디자인: <b>120도 플레어 스커트</b>                      2)치마길이: 무릎아래 5cm                      (종발빠 둥근부분 아래끝 부분까지)                      3)옆 주머니: 15도 각도 양쪽 지퍼여밈 부착                      4)이중 잠금: 겹은 후크, 안은 단추                      5)안감: 폴리에스테르 100%(정전기방지용)                      6)옆선 주머니 경계부분, 밑단 바느질 꼼꼼하게(쉽게 뜯어지지 않도록)                      7)여유 단 넉넉하게                      8)허리선 늘림 지퍼</p>
		<p>*색깔: 흑감색                      *재질: 모/폴리/우레탄 = 60/38/2</p>	<p>1)길이: 복사빠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2)일자 슬림핏 디자인                      3)앞 지퍼, 위 후크                      4)양쪽 허리 조절기 필수</p>
  <p>→ 학교 마크</p>		<p>*원단: 모슬린 (신축성원단)                      *색깔: 백색                      *재질: 폴리/레이온= 75/25                      *배색(백선 드러나도록): 검정 (모/폴리=60/40)</p>	<p>1)단추 - 백색 싸개 5개(18mm)                      소매: 백색 싸개 단추 2개씩 (13mm)                      2)앞, 뒤 다트 1개씩                      3)폼 - 여유 있게                      : 주먹 두개가 들어갈 만큼의 넉넉한 크기                      4)길이:허리벨트 밑선에서 <b>5cm 이상 내려와야 함.</b>                      5)백선 표시(0.7cm 검정색 2줄 배색으로 백선이 드러나도록 함)                      6)학교 마크 부착                      7)겨드랑이 땀받이 부착형                      8)윙카라 디자인                      9)오각 주머니                      10)안감:폴리에스테르100%(정전기 방지용)                      11)교복 상의 여밈(속) 지퍼(흑은 잠금 처리)추가                      12)아랫단 여밈용 똑딱단추 부착                      13)단추 바느질 꼼꼼하게(쉽게 뜯어지지 않도록)</p>

■ 하복 ■

		원 단 명	특 징
		<p>*원단: 모슬린 (신축성 원단)</p> <p>*색깔: 백색</p> <p>*재질: 폴리/레이온 = 75/25</p> <p>*배색: 검정 (모/폴리=60/4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추 - 백색 싸개 5개(18mm)</li> <li>2)앞, 뒤 다트 1개씩</li> <li>3)소매길이: 겨드랑이에서 7cm이상 내려오게 함</li> <li>4)소매통 여유있게</li> <li>5)폼 - 여유 있게 : 주먹 두개가 들어갈 만큼의 넉넉한 크기</li> <li>6)길이: 허리벨트 밑선에서 <b>5cm 이상 내려와야 함.</b></li> <li>7)백선 표시(0.7cm 검정색 2줄 배색으로 백선이 드러나도록 함)</li> <li>8)학교 마크 부착</li> <li>9)겨드랑이 땀받이 부착형</li> <li>10)왕카라 디자인</li> <li>11)오각 주머니</li> <li>12)등판 안감 매쉬처리</li> <li>13)안감:폴리에스테르 100%(정전기 방지용)</li> <li>14)교복 상의 여밈(속) 지퍼(혹은 잠금 처리로 제작)추가</li> <li>15)아랫단 여밈용 똑딱단추 부착</li> <li>16)단추 바느질 꼼꼼하게(쉽게 뜯어지지 않도록)</li> </ol>
<p>치 마 / 바 지 ^ 선 택 v</p>		<p>*원단: 개버딘(사방스판)</p> <p>*색깔: 흑감색</p> <p>*재질: 모/폴리 = 50/5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디자인: <b>120도 플레어 스커트</b></li> <li>2)치마길이: 무릎아래 5cm (종발뼈 둥근부분 아래끝 부분까지)</li> <li>3)옆 주머니: 15도 각도 양쪽, 지퍼여밈 부착</li> <li>4)이중 잠금: 겹은 후크, 안은 단추</li> <li>5)안감: 폴리에스테르 100%(정전기방지용)</li> <li>6)옆선 주머니 경계부분, 밑단 바느질 꼼꼼하게 (쉽게 뜯어지지 않도록)</li> <li>7)여유 단 넉넉하게</li> <li>8)허리선 늘림 지퍼</li> </ol>
		<p>*원단: 기능성 쿨스판</p> <p>*성유 혼용률: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7%</p> <p>*색깔: 흑감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길이: 복사뼈 아래로 (단분시점 분량 - 5cm이상)</li> <li>2)일자 슬림핏 디자인</li> <li>3)앞 지퍼, 위 후크</li> <li>4)양쪽 허리 조절기 필수</li> </ol>

■ 교복 견본 ■

동복	간복	하복
		
		
		

**【별표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10.27. 학교규칙 반영**

학교규칙 제52조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생활지도)

- 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한다.
-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④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교무실 등)
- ⑤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교무실 등)

[제52조 ④항, ⑤항에 대한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④항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②항 또는 ③항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감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교사가 학생을 상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⑤항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 ④항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여 실시함. ※ 제52조 제③항 및 제④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함.				

학교규칙 제53조(소지품 검사 및 물품 보관에 대한 생활지도)

- ①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려서는 아니 된다.
- ②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원은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 ③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가급적 담임교사가 실시한다.
- ⑥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다.

[제53조제 ⑥항에 대한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53조 제①, ②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라이터, 레이저 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li> <li>·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li> </ul>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⑦ 교원은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규칙 제54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생활지도)

- ①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 조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교과 지도교사가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 ②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